

부 산 지 방 법 원

제 9 민 사 부

판 결

- 사 건 2015가합49777 총회결의무효확인
원 고
1. 이정우
부산 금정구 오륜대로 84, C동 301호(부곡동, 부곡빌리지)
 2. 박동수
대전 유성구 봉명로 48, 804동 1401호(원신흥동, 신안인스빌리베라)
 3. 김영채
서산시 팔봉면 진장2길 60-21(진장리)
 4. 서재원
화성시 메타폴리스로 54, 2001호(반송동, 동탄파라곤II)
 5. 김진홍
전남 해남군 읍성내리 21-9
 6. 곽원섭
대구 수성구 들안로 135-1(중동)
 7. 함원중
천안시 동남구 서부대로 559(봉명동)
 8. 이희성

전주시 덕진구 장동 산 131-1

9. 김진운

여수시 시청서2길 51-6(학동)

10. 서용순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146번길 11-7(복대동)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제 담당변호사 홍성주, 남일

피 고 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

부산 부산진구 서면로 21, 4층(부전동, 양지빌딩)

송달장소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267번길 12, 102동 100호(감전
동, 선경하이츠빌라)

대표자 이사 조장래, 박재홍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휘열

변 론 종 결 2016. 12. 14.

판 결 선 고 2017. 1. 25.

주 문

1. 피고가 2015. 11. 7.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선진 낚시 문화발전 창작에 관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2010. 10. 28.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2010. 11. 16. 설립등기를 마친 사단법인으로, 2011. 4. 2. 별도 단체로 활동하던 (사)한국프로낚시연맹과 통합단체명을 '피고'로 하여 통합하였다(이하 통합 전 피고(사단법인 한국프로낚시연맹)를 '갑 연맹'이라 하고, 통합 전 (사)한국프로낚시연맹을 '을 연맹'이라 한다).

2) 원고들은 피고의 회원이다.

나. 통합에 따른 임원구성

1) 갑, 을 연맹은 2011. 4. 2. 통합 협의 당시 양측의 회장 조장래(갑 연맹)와 박재홍(을 연맹)을 통합 후 피고의 공동대표로 선임하기로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정관 제34조(임원의 정수) 제1항 규정을 기존 '임원으로 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15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라는 내용에서 '임원으로 공동대표 2인, 이사 5인 이상 1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라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2012. 2. 28. 법인등기부에 이사 중 조장래와 박재홍에게만 공동대표권이 있다는 취지를 기입하였다(한편 피고가 위 정관변경허가를 받기 위해 농림수산물식품부에 제출했던 자료에 의하면, 통합 당시 갑, 을 연맹의 회원 수는 각 396명, 220명이었다).

다. 임시총회소집허가에 따른 2015. 6. 27.자 임시총회

1) 을 연맹 측 대표인 박재홍 등 25명은 2015. 5. 13. 부산지방법원 2015비합24호로 회원수가 84명으로 기재된 피고의 회원명단을 제출하면서 '임원 임기 3년이 만료됨에 따라 임원 선출을 위한 총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갑 연맹 측 대표인 조장래가 소집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였고, 2015. 6. 5. 위 법원으로부터 '이사 및 대표권 있는 이사의 선임과 정관 개정(주사무소 이전, 공동대표규정 삭제)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임시총회소집을 허가한다'라는 결정을 받았다.

2) 이에 따라 2015. 6. 27. 개최된 피고의 임시총회에서 정관 제34조 제1항을 대표이사 1인, 이사 5인 내지 15인 이내, 감사 2인을 두는 것으로 변경하고, 박재홍을 피고의 1인 대표이사로 선임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라. 해양수산부 중재 회의

1) 피고의 1인 대표이사로 선임된 박재홍은 2015. 7. 15.경 해양수산부에 위 정관변경에 관한 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원고 이정우 등은 위 2015. 6. 27.자 임시총회가 갑 연맹 출신 회원들에 대한 소집절차 없이 의사정족수에도 미치지 못하는 84명의 회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 무효라고 항의하였다.

2) 이에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 함재국 사무관의 중재로, 갑 연맹 측 대표 박동수, 을 연맹 측 대표 박재홍은 2015. 8. 11. 해양수산부 회의실에서 회의(이하 '이 사건 해양수산부 회의'라고 한다)를 갖고, 총회 개최를 위한 이사회를 2015. 8. 31. 열어 아래와 같은 내용을 결의하기로 논의하였다.

2. 이사회 안건은 아래와 같이 정하며, 이외에 사안은 본안을 훼손하지 않는 사항으로 정할 수 있다.

① 총회일자 확정

- ② 회원의 자격조건(양측이 동등한 조건으로 2014. 8. 11. ~ 2015. 8. 10.까지 회비 25만 원을 납입한 자를 회원으로 자격을 정함)
- ③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양측 각 2명으로 4명 중 위원장 선임)
- ④ 출범 회비 선납(양측은 총회 개최 이전에 해양수산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제2항에서 정한 회원자격을 확인받은 인원내 대하여 1인당 25만 원의 회비를 총회 개최 10일 전 까지 대표책임 선납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서 납입된 회비 관리(회비 입금은 법인 공동대표 조장래, 박재홍 명의로 하며 통장과 인감은 차기 임원진이 구성되어 인계전까지 해양수산부 담당부서에서 관리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 ⑥ 정관 개정 안건으로 법인 대표 1인, 15인 이내의 이사, 감사 2명을 선임하고, 법인 주소는 양측 주소지 외에 새로운 장소로 정한다(이사, 감사의 수 및 주소지 변경 건 외의 안건은 본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안건으로 의결한다).

마. 2015. 8. 30.자 이사회

피고는 2015. 8. 30. 이사 총 14명 중 13명(그 중 1명은 위임)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를 개최하고, 임시총회 개최 및 회원 자격기준 안건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하였다.

제2호 의안 : 임시총회 개최에 관한 건

의장은 ... 임시총회 개최일을 2015. 11. 7. 오후 6시, 개최장소를 경남 진주시에서 개최할 것을 물은바, 참석이사 중 의결정족수 찬성으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제3호 의안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출

의장은 ...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할 선거관리위원 5명을 선출할 것을 물은바, 법정수에 달하는 의결정족수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양측 각 5명씩 추천하여 이사회 참석이사의 표결에 의해 과반수의 찬성을 득한 후보 5명 이사 김정동, 정대진, 김승태, 박재홍, 회원 김광우를 표결, 법정수에 달하는 의결정족수의 찬성으로 이를 승인 가결하다.

제4호 의안 : 회원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정관 제10조, 제11조, 제31조)

의장은 정관 제10조(회원의 자격), 제11조(회원의 권리의무), 제31조(이사회의 의결사항)에 의거하여, 정관 제2조(목적) 및 제17조(사업)에 동의한 자로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본회에서 정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한 회원수를 회원으로 인정할 필요를 상세히 설명하고, 연회비를 25만 원으로 정할 것과, 피고가 정한 정회원 의무규정 서약서에 서명한 사람에 한하여 임시총회개최 10일 전까지 양측의 회원 수에 일치하는 1인당 회비 25만 원을 대표 책임선납을 하며, 피고 대표 명의의 통장에 입금할 것과 차기 대표가 선출되어 인계를 요구하기 전까지 통장 분실, 도난 등 여타 변수에 대비하여 입·출금을 금하며, 이를 주무관청인 해양수산부 담당 지원정책과 함재국 사무관과 조수정 주무관에 위탁관리 할 것을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 그를 승인 가결하다.

제5호 의안 : 정관변경의 건

의장은 ... 정관 제34조(임원의 정수) 제1항 규정인 '연맹의 임원으로 회장 2인, 이사 5인 이상 1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 중 '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 1인 이내를 둔다'로 개정할 것과 가부를 물은바, 참석이사 전원 만장일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2015. 11. 7. 임시총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하다.

바. 회원명단 제출 등

1) 이 사건 해양수산부 회의(2항의 ④)에 따라 함재국 사무관은 2015. 8. 18.경 갑, 을 연맹 측에 '피고 회원임을 확인할 수 있는 회비 납입자 명단(회원명부 : 직책, 주소, 전화번호), 법인통장 등 일체자료'를 2015. 8. 24.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하였다.

2) 갑 연맹 측은 그 무렵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사이에 회비를 납부한 회원 248명의 명부(원고 이정우, 박동수 등 포함)와 회비납입 통장사본을 함재국사무관에게 제출하였으나, 을 연맹 측은 2015. 8. 24.까지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

3) 이후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구성된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박재홍은 2015. 10. 13.과 2015. 10. 22. 갑, 을 연맹의 각 홈페이지에 "피고의 회장 및 등

기이사 선거를 2015. 11. 7. 실시한다. 2015. 10. 14.부터 2015. 10. 16.까지 3일간 선거인 명부, 법인인감카드 및 도장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선거일 10일 전인 2015. 10. 28.까지 '사)한국프로낚시연맹 회원회비통장' 명의로 된 통장(갑 제9호증, 이하 '이 사건 통장'이라 한다)에 연회비 25만 원을 입금하여야 총회 의결권 및 선거권이 있다"라는 취지로 공고하였다.

4) 을 연맹 측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에 회장 후보자를 등록하면서 272명의 회원명단(을 제2호증의 1)을 제출하고, 2015. 10. 26. 이 사건 통장에 위 회원 272명의 명의로 각 25만 원씩을 입금하였다. 그러나 갑 연맹 측은 '이 사건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 해양수산부 회의 내용과 달리 을 연맹 측 5인으로만 이루어져 위법하고, 을 연맹 측이 해양수산부에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회비 25만 원을 납입한 회원명단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원명단이 확정될 수 없다'라고 반발하면서 회장 후보자를 등록하거나 회비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사. 2015. 11. 7.자 임시총회

피고는 2015. 11. 7.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안건을 결의(이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라 한다)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 의사록에는 을 연맹 측이 제출한 회원명부(을 제2호증의 1)의 272명 중 263명이 참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피고의 정관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정관 규정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피고의 소재지는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522-30 양지빌딩 4층에

두고, 지부 사무소는 각 시도에 설치한다.

제2장 회원

제10조(회원의 자격) 피고의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피고의 회원은 제2조(목적)과 제17조(사업)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2. 피고는 매 회계연도마다 회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자격을 확인하여야 한다.
3. 피고 소정의 입회서류를 제출하여 해당지역 지부장의 인준을 받아 소양교육을 필한자로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회원의 권리의무) 피고의 모든 회원은 정관에 정한 다음의 권리의무를 갖는다.

1. 총회에서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다.
2. 이사회에서 정한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갖는다.
3. 정관, 제 규정, 총회, 이사회, 의결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가입) ① 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피고에 가입코자 하는 자는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연맹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가입금을 지정한 기일 내에 연맹에 납부함으로써 회원이 된다.

제13조(가입금) ① 연맹은 연맹에 가입하는 자로부터 소정의 가입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입금의 금액 및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법정탈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로 인하여 탈퇴한다.

1.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 ② 제1항 제1호에 의한 자격상실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2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총회의 소집은 회의 일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과 회의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정관의 변경
8.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24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이나 정관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총 회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특별의결 사항) 다음 사항은 총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제31조(이사회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부의할 사항
8.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선정

제5장 임원

제34조(임원의 정수) ① 피고의 임원으로 공동대표 2인, 이사 5인 이상 1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5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 ① 피고의 임원선거 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피고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회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장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이 회장 후보자 등록을 한 때에는 당해 위원은 위원자격을 상실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6, 17호증, 을 제2, 6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함재국의 증언, 이 법원의 해양수산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갑, 을 연맹 측은 이 사건 해양수산부 회의 및 이 사건 이사회에서 '2014. 8. 11. 부터 2015. 8. 10.까지 연회비 25만 원을 납부한 사람'만을 피고의 회원으로 인정하기

로 결의하였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갑 연맹 출신 회원들에 대한 소집통지 없이 실제 회원임이 확인되지도 않은 을 연맹 출신 사람들만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져 무효이다.

나. 피고

을 연맹 측 대표 박재홍이 이 사건 해양수산부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있으나 그 내용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피고의 이사회가 위 회의내용대로 의결하도록 구속되는 것도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에서 '임시총회개최 10일 전까지 피고 대표 명의 통장으로 연회비 25만 원을 납입한 사람'에 한하여 회원자격을 부여하기로 결의하고 이를 공고하였는데, 갑 연맹 측은 을 연맹 측과 달리 이 사건 임시총회개최 10일 전까지 이 사건 통장에 연회비 25만 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이 사건 임시총회는 피고의 회원으로 확정된 272명의 회원 중 263명이 참석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므로 유효하다.

3. 판단

가. '회원 자격기준'에 관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의미

피고 정관은 가입신청서와 가입금을 제출·납부하여 피고의 회원이 된 사람(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항)은 이사회에서 정한 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제11조 제2호), 피고의 이사회가 법정탈퇴사유 중 하나로 '회원이 될 자격의 상실' 사유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항). 따라서 피고의 이사회는 기존 회원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회원이 될 자격을 상실하는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정관 규정에다가 위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갑, 을 연맹은 2011년에 통합된 이후에도 회원들을 각

자 관리하면서 사실상 별도 단체처럼 활동하다가 2015년경 피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대표 1명만을 선출하기로 합의하게 된 점, ② 갑, 을 연맹 출신의 회원 수가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피고의 특수한 구조 때문에, 피고로서는 회원의 자격에 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세워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의 자격과 의결권을 박탈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③ 이사회결의 중 '임시총회개최 10일 전까지 양측의 회원 수에 일치하는 1인당 회비 25만 원을 대표 책임으로 선납한다'라는 부분은 전후 문맥상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갑, 을 연맹의 각 통장에 연회비 25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피고 회원의 자격이 있으니, 갑, 을 연맹 측은 회원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1인당 회비 25만 원을 공동 통장으로 함께 입금하여 새로 선출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회비를 관리하게 하자는 의미로 해석될 뿐, 임시총회개최 10일 전까지 피고 대표 명의 통장에 연회비 25만 원을 입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연회비 25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의 회원으로 인정해주겠다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 중 '제4호 의안 : 회원 자격기준'에 관한 부분은 피고의 회원들 중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갑, 을 연맹의 각 통장에 연회비 25만 원을 납부하는 등 실제로 지난 1년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해온 사람에 한하여 회원 자격을 유지시키고, 그 외의 사람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을 박탈시키기로 하는 법정탈퇴 사유를 정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이 사건 해양수산부 회의 내용에 대하여 최종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다투나, 이 사건 이사회결의 내용만으로도 피고의 이사회가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연회비 25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사람'에 대해 회원의 자격을 박탈시키기로 결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의 효력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기존 회원 중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연회비 25만 원을 납입한 사람은 피고의 회원으로서 총회 의결권이 있는 반면, 위 기간 내에 연회비 25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한 사람은 피고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여 총회 의결권이 없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적법한 이사회결의도 없이, 을 연맹 출신 회원 272명에 대하여만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연회비 25만 원을 납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시총회 개최 10일 전 까지 이들 명의로 이 사건 통장에 25만 원만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회원의 자격 및 총회 의결권을 인정하였다. 또한 을 제17,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실제 이 사건 임시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을 연맹 출신 회원들이 2014. 8. 11.부터 2015. 8. 10.까지 연회비 25만 원을 납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입금내역에 비추어 회비납부 내역이라 보기 어렵다)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임시총회결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피고의 회원으로 볼 여지가 큰 갑 연맹 출신 회원 248명을 완전히 배제한 상태에서 피고의 회원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을 연맹 출신 회원 272명에 의해서만 이루어진 것으로서, 총회의 소집은 7일 전에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한 정관 제22조 및 회원에 의해서만 총회 의결을 하도록 규정한 정관 제23조, 제24조, 제25조를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한편 피고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피고의 회원인 원고들에게는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전국진

전국진 


판사

정진화

정진화 

판사

이강은

이강은 

목록

1. 제1호 의안 정관변경의 건

정관 제34조 제1항 '연맹의 임원으로 공동대표 2인, 이사 5인 이상 14인 이내, 감사 2인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는 규정 중 '회장 1인, 이사 5인 이상 10인 이내, 감사 1인 이내를 둔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사회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이 아닌 자 중에서 상무이사 1인을 둘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하고, 총회 이후 실시하는 이사 선거의 결과에 따라 5인의 이사가 선임되면 그 중 대표권 있는 이사 선임은 선출된 이사들 중 연장자가 대표권이 있는 이사로 취임하기로 한 결의

2. 제2호 의안 주사무소의 이전의 건

정관 제3조의 주사무소의 소재지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서면로 21 양지빌딩 4층'을 삭제하고 차후 임원진이 구성된 경우 새로운 주사무소의 장소를 '부산 사상구 학감대로 267번길 12, 1층 101호(감전동)'에 두기로 한 결의.

3. 전신규를 회장으로 선출하기로 한 결의

4. 박재홍, 윤재호, 김광우, 선용철, 김성훈을 등기이사로 선출하기로 한 결의. 끝.

정본입니다.

2017. 1. 26.

부산지방법원

법원주사 강석진



판결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 정본을 송달받은 날(발송송달의 경우에는 발송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장을 민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원심법원인 이 법원(부산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조의 보조참가인의 경우에는 피참가인을 기준으로 상소기간을 계산함에 유의).

※ 각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번호조회 메뉴를 이용하거나, 담당 재판부에 대한 문의를 통하여 이 문서 하단에 표시된 발급번호를 조회하시면, 문서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